

충청북도농지개량제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7년 5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7년 5월 16일

3. 제안 이유

-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4. 주요 골자

- 조례명을 충청북도농지개량제관리조례로 함
- 농지개량제원은 개량제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등으로 함.
- 농지개량제를 조직하고자 하는자는 개량제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함.
- 농지개량제의 조직 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수혜 면적이 5만㎡이상으로 함.
- 농지개량제의 임무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과 재해 복구등으로 함.
- 농지개량제의 경비 부과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경비는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비 전액으로 함.
- 농지개량제가 농조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불가항력에 의한 손괴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할 수 있도록 함.

## 5. 검토 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구역외에 있는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지개량계 관리조례로 정하고,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량계의 조직 운영 사항을,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개량계의 조직 기준을 수혜자의 5인 이상, 면적은 5만㎡이상으로 정하고, 등록사항, 규약의 기재 사항을, 제7조에서는 개량계원의 자격을, 제8조, 제9조에서는 개량계에 필요한 총회, 임원 등을 규약으로 정하고, 제10조에서는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과 기반 시설의 재해복구등 개량계의 임무를,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개량계의 경비 부과 및 경비부과 조정 신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비치 서류를, 제15조에서는 개량계의 필요 사유 소멸시 개량계의 해산 사항을, 제16조, 제17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시장, 군수에게 관한 위임사항을, 그리고 별지에는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재해시 신속한 시설복구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6. 첨부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 1부 “끝”